

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3702-3114(구내, 3954)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프랭클린템플턴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 1호
- 나. 분류 : 증권집합투자기구(투자신탁), 혼합채권형, 개방형, 추가형
- 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2년 2월 14일 ~ 2013년 2월 13일
- 라. 집합투자업자 :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: (주)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동부증권, 대우은행, 부국증권, 동양증권, 한국투자증권, 교보증권, HSBC은행, 신영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산업은행, LIG투자증권, (한화투자증권)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(주1)	
		변경전	변경후
2012 05.03	제49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보고 서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

(주1) : 자세한 변경내용은 집합투자규약(신탁계약서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천원)

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 인명 삼일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 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 방법
회계 법인	(주1)	770	서면					

(주1) :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 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 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 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- 공정함
 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- 적정함
 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 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 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 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* 본 항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에서 제외됨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